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경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569

발의연월일: 2021. 7. 19.

발 의 자:김경만·강득구·김수흥

김홍걸 · 문진석 · 송옥주

윤미향 • 이규민 • 이성만

황운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은 협동조합, 사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가 조합원사(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 협동조합, 사업협동조합)의 신청을 받아 위탁기업과 납품대금의 조정을 협의할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현행법의 협동조합, 사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의 업무에 상기 내용을 포함하고,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하도급대 금 조정협의 업무는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이 할 수 있으므로 협동 조합연합회의 업무에서 삭제, 중소기업중앙회의 업무에 중소기업 일자 리 사업과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관 설립을 추가하고자 함.

또한,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주무관청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등 법령을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물가변동률 등 사회적·경제적 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상향 조정하고자 함(안 제35 조제1항제14호 신설, 제82조제1항제12호 신설, 제93조제1항제14호 삭제, 제106조제1항제24호부터 제26호까지 신설, 제141조제1항 및 제2항).

법률 제 호

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5조제1항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제15호 및 제16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16호(종전의 제15호) 중 "제14호"를 "제15호"로 한다.

- 14.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위탁기업과 조합원인 수탁기업 간의 납품대금 협의 및 조정 지원
- 제82조제1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13호(종전의 제12호) 중 "제11호"를 "제12호"로 한다.
 - 12.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위탁기업과 조합원인 수탁기업간의 납품대금 협의 및 조정 지원
-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"제10호, 제14호 및"을 "제10호 및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4호를 삭제한다.
- 제106조제1항제24호를 제27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24호부터 제2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27호(종전의 제24호) 중 "제23호"를 "제26호"로 한다.
 - 24. 「대·중소기업간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위탁기업과 조

합원인 수탁기업간의 납품대금 협의 및 조정 지원

25. 중소기업을 위한 일자리 사업

26. 중소기업 홍보관 설치·운용 및 관리

제141조제1항 중 "50만원"을 "500만원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중 "30만원"을 "500만원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
제35조(업무) ① 조합은 설립 목	제35조(업무) ①	
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		
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		
할 수 있다.		
1. ~ 13. (생 략)	1. ~ 13. (현행과 같음)	
<u> <신 설></u>	14.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	
	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위	
	탁기업과 조합원인 수탁기업	
	<u>간의 납품대금 협의 및 조정</u>	
	<u>지원</u>	
<u>14.</u> (생 략)	<u>15.</u> (현행 제14호와 같음)	
<u>15.</u> 그 밖에 제1호부터 <u>제14호</u>	<u>16.</u> <u>제15호</u>	
까지에 규정된 사업과 관련된		
부대사업		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	
제82조(업무) ① 사업조합은 다음	제82조(업무) ①	
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		
부를 할 수 있다.		
1. ~ 11. (생 략)	1. ~ 11. (현행과 같음)	
<u> <신 설></u>	12.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	
	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위	
	탁기업과 조합원인 수탁기업	
	간의 납품대금 협의 및 조정	
	<u>지원</u>	

- 12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
- ②・③ (생 략)
- 제93조(업무) ①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 부를 할 수 있다. 다만, 행정구 역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는 제 4호, 제5호, 제9호, 제10호, 제1 4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.
 - 1. ~ 13. (생 략)
 - 14.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 한 법률 | 에 따른 원사업자와 조합원인 수급사업자 간의 하 도급대금 조정지원

15. • 16. (생략)

② ~ ④ (생 략)

제106조(업무) ① 중앙회는 다음 제106조(업무) ① -----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
1. ~ 23. (생 략)

<신 설>

<신 설>

<u>13.</u>	제12호
②・③ (현행과 같음)	
제93조(업무) ①	
<u>제10</u> 5	<u>호 및</u> -
1. ~ 13. (현행과 같음)	
<u><</u> 삭 제>	

- 15. 16. (현행과 같음)
-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- 1. ~ 23. (현행과 같음)
- 24. 「대·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위탁 기업과 조합원인 수탁기업간 의 납품대금 협의 및 조정 지 <u>원</u>

25. 중소기업을 위한 일자리 사

<신 설>

- 24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3호까지에 규정된 사업과 관련된부대사업
- ② ~ ⑨ (생 략)
- 제141조(과태료) ① 제131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게는 <u>50만원</u>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- ② 조합, 사업조합,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발기인·임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면 <u>30만원</u>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- 1. ~ 13. (생략)
 - ③ (생 략)

<u>선</u> <u>ㅂ</u>
26. 중소기업 홍보관 설치·운용
<u> 및 관리</u>
<u> 27.</u> <u>제26호</u>
② ~ ⑨ (현행과 같음)
제141조(과태료) ①
<u>500</u> 만원-
②
500만원
<u>.</u>
1. ~ 13. (현행과 같음)
③ (현행과 같음)